

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709
----------	------

2026년 6월 24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26년 5월 26일
- 다. 회부일 : 2026년 5월 27일
- 라. 상정일 :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2026년 6월 16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평생교육국장 정진우)

가. 제안이유
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12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. 12. 27. 만료 예정임에 따라,
-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-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13조(지원센터의 위탁)
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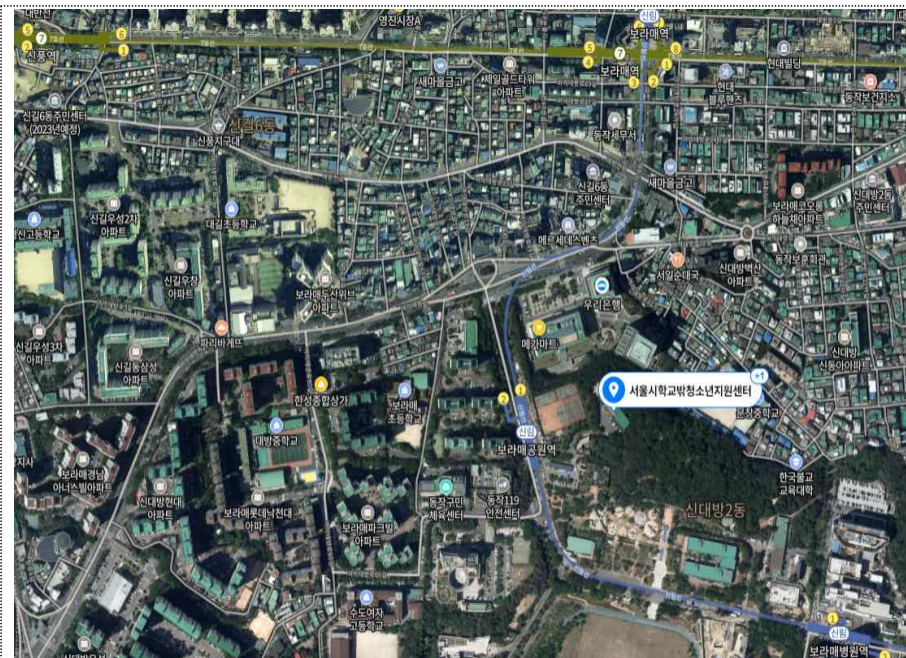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로,
- 정서불안, 사회적 관계 단절, 진로 미확립 등 복합적 어려움과 위기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상담·진로·진학 등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함.
- 또한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○ 위탁 사무 내용

-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, 학업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협력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견 및 확산
-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
-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23-1, 자유회관 3층
- 개관일자 : 2001. 4. 6.
- 시설규모 : 307.56㎡
- 주요시설 : 사무실, 상담실, 활동실, 휴게공간 등
- 위치도



- 민간위탁 기간 : 1년 6개월(2026.12.28. ~ 2028.6.30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 - 소요예산 : 1,799백만원('26년)
 - 산출근거
 - 인건비 606백만원, 운영비 58백만원, 사업비 1,135백만원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본 동의안은 ‘(재)스마트교육재단·(재)서울현대교육재단’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(이하 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’)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27일 만료될 예정으로, 향후 1년 6개월간(2026.12.28.~2028.6.30.)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·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〈 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’의 개요 〉

- **위탁사무명** :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
- **위탁사무**
 -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, 학업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
 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 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협력
 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 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견 및 확산
 -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
 -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
- **소재지** :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23-1. 자유회관 3층
- **시설규모** : 307.56㎡
- **개관일자** : 2001. 4. 6.
- **주요시설** : 사무실, 상담실, 활동실, 휴게공간 등
- **위탁기간** : 1년 6개월(2026.12.28. ~ 2028.6.30.)
- **수탁자 선정방식** : 공개모집
- **소요예산** : 1,799백만원(2026년)
 - 산출근거 : 인건비 606백만원, 운영비 58백만원, 사업비 1,135백만원,
- **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** : 적정

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01년 개관하여, 학교법인 연세대학교('01.4.6. ~'13.6.30.)와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('13.7.1.~'23.9.28.)의 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재단법인 스마트교육재단·서울현대교육재단 컨소시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, 연면적 307.56㎡ 시설로, 현원 15명(정규직 11명, 비정규직 4명, 2026.4.30. 기준)의 직원이 17억 9천 9백만원(2026년)의 예산으로 3개 분야, 1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.

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 〉

구 분	위탁기간	수탁기관	선정방법
최초위탁	3년 ('01. 4. 6. ~ '04. 4. 5.)	(학)연세대학교	신규(공개모집)
2차 위탁	3년 ('04. 4. 6. ~ '07. 4. 5.)	(학)연세대학교	재위탁(공개모집)
3차 위탁	3년 ('07. 4. 6. ~ '10. 4. 5.)	(학)연세대학교	재위탁(공개모집)
4차 위탁	3년 ('10. 4. 6. ~ '13. 6.30.)	(사)한국청소년재단	재위탁(공개모집)
5차 위탁	3년 ('13. 7. 1. ~ '16. 6.30.)	(재)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	재위탁(공개모집)
6차 위탁	2년 ('16. 7. 1. ~ '18. 6.30.)	(재)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	재계약
7차 위탁	3년 ('18. 7. 1. ~ '21. 6.30.)	(재)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	재위탁(공개모집)
8차 위탁	2년 ('21. 7. 1. ~ '23. 9.28.)	(재)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	재계약
9차 위탁	3년 ('23. 9.29. ~ '26. 9.28.)	(재)스마트교육재단 (재)서울현대 교육재단 컨소시엄	재위탁(공개모집)

※ 9차 위탁('23.9.29.~'26.9.28.) 종료 후 現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 일시연장

「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 위탁기간 일시연장 추진계획」(청소년정책과-9806호, '26.5.12.)

- 연장기간 : '26.9.29.~'26.12.27. (90일 연장)
- 연장사유 :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종료 시기 조정('26.9.28. → '28.6.30.)에 따른 재위탁 추진(1년 6개월, '26.12.28.~2028.6.30.)을 위해 재위탁 절차 이행 기간 확보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기간 연장
- 추진근거 :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
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리운영 위·수탁 협약서」 제5조제2항

○ 평생교육국은 2024년 10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상실(「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업무의 교육청 이관) 등을 이유로 학교밖청소년센터 운영 종료('26.9월말) 방침(「시립청소년시설 재구조화 및 운영 개선방안」, '24.10.23.)을 마련하였고, 이후 202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(꿈드림 센터)의 직영 전환을 통해 전달체계 일원화 및 광역 단위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침(「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개선계획」, '25.5.28.)을 마련하였으나,

- 최근 또다시 운영 계획을 변경(사유: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능 강화의 필요성 및 시설 개편 방안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등)하여, 재위탁을 추진(꿈드림 센터 위탁종료 시점('28.6.30.)까지 1년 6개월 재위탁) 하고자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.

※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 중첩 (「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개선계획」 13페이지, '25.5.28.)

- 시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(구, 여성가족부)의 이원화된 서비스체제로 기능 중첩 등 비효율적 운영 → 직영 전환 검토

구 분	시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(서울시)	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(여가부)
설치근거 센터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1개소(시립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26개소(시1, 구25) ※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'꿈드림'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
전달체계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아웃리치 → 학교밖 센터 → 상담 프로그램 </div> <p>< (자체발굴) 청소년 정보 미연계 ></p>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학교 교육청 → 시·구 꿈드림 → 상담 프로그램 </div> <p>< (시스템) 청소년 정보 자동연계 ></p>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교 밖 청소년 지원(상담, 진학 지원(멘토링), 인식개선 사업 등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업료·학습비 등 현금성 지원사업 인턴십 지원, 권익보호 프로그램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정고시, 대학진학, 자격취득 등 지원 건강검진·급식 지원

※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 운영 방침 변경

- 「시립청소년시설 재구조화 및 운영 개선방안」(행정1부시장방침 제214호, '24.10.23.)
 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종료 추진('26.9월말) 및 업무 이관(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, 꿈드림 사업)
 - 「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」(행정1부시장방침 제86호, '25.5.28.)
 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종료('26.9월말) 및 청소년지원센터(꿈드림 센터) 직영 전환 추진
 - 「2026년 하반기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(재위탁)」(청소년정책과-9494호, '26.5.6.)
 - 운영방식 재검토에 따라 운영종료 시기 연장을 위한 재위탁 추진(*90일 일시연장, '26.9.29.~'26.12.27.)
 - 「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」 제출('26.5.26.)
 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추진 : 1년 6개월(2026.12.28. ~ 2028.6.30.)
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로, 평생교육국은 복합적 어려움(정서불안, 사회적 관계 단절, 진로 미확립 등)과 위기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상담·진로·진학 등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나,
-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이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 내부 방침(행정1부시장방침, '26.9월말 운영종료 및 업무이관, 직영 전환) 등을 통해 2026년 9월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종료를 여러 차례 언급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, 현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일시연장('26.9.29.~'26.12.27., 90일 연장) 추진을 비롯해 센터의 운영종료가 아닌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배경 및 당위성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고 있는바, 평생교육국의 운영 방침 변경('26.9월말 운영종료 → 민간위탁 재추진)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 없이 본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.

- 또한, 본 민간위탁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2026년 제3차, '26.5.7. 개최)는 '연장기간 예산 확보안 마련, 교육청 및 꿈드림사업과 중복사업 재정비, 학교밖청소년의 다양한 유형 검토해 세부사업 정비'를 권고하고 있는바,
 - 평생교육국의 일시 연장에 따른 지원 예산 확보 여부,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유사·중복사업 재정비 및 세부사업 정비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, 구체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< 2026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>

- 심의일자 : 2026년 제3차 위원회 (2026년 5월 7일)
- 심의결과 : 적정(권고)
- 심의의견 : 1) 연장기간 예산 확보안 마련, 2) 교육청 및 꿈드림사업과 중복사업 재정비, 3) 학교밖청소년의 다양한 유형 검토해 세부사업 정비

- 마지막으로, 2023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수탁 협약 체결(위탁기간 3년, '23.9.29.~'26.9.28.) 이후 현 수탁법인((재)스마트교육재단, (재)서울현대교육재단 컨소시엄)의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결과('24년 실적 87.76점)가 '재계약 배제기준' [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개선계획(행정1부시장 방침, '25.5.28.) - 청소년시설 운영 평가점수 85점 미만시 재계약 배제]인 평균 85점을 상회하여, 재계약(2년 연장)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, 평생교육국은 현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일시연장('26.9.29.~'26.12.27., 90일 연장)만 체결하였고, 본 동의안을 통해 새로운 재위탁(1년 6개월, '26.12.28.~2028.6.30.)을 추진하는바,
 - 평생교육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방식(당초 '26.9월말 운영종료 → 민간위탁 재추진, 현 수탁기관과 일시연장 후 새로운 재위탁 추진)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, 현 수탁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5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70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12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. 12. 27. 만료 예정임에 따라,
- 나.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-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13조(지원센터의 위탁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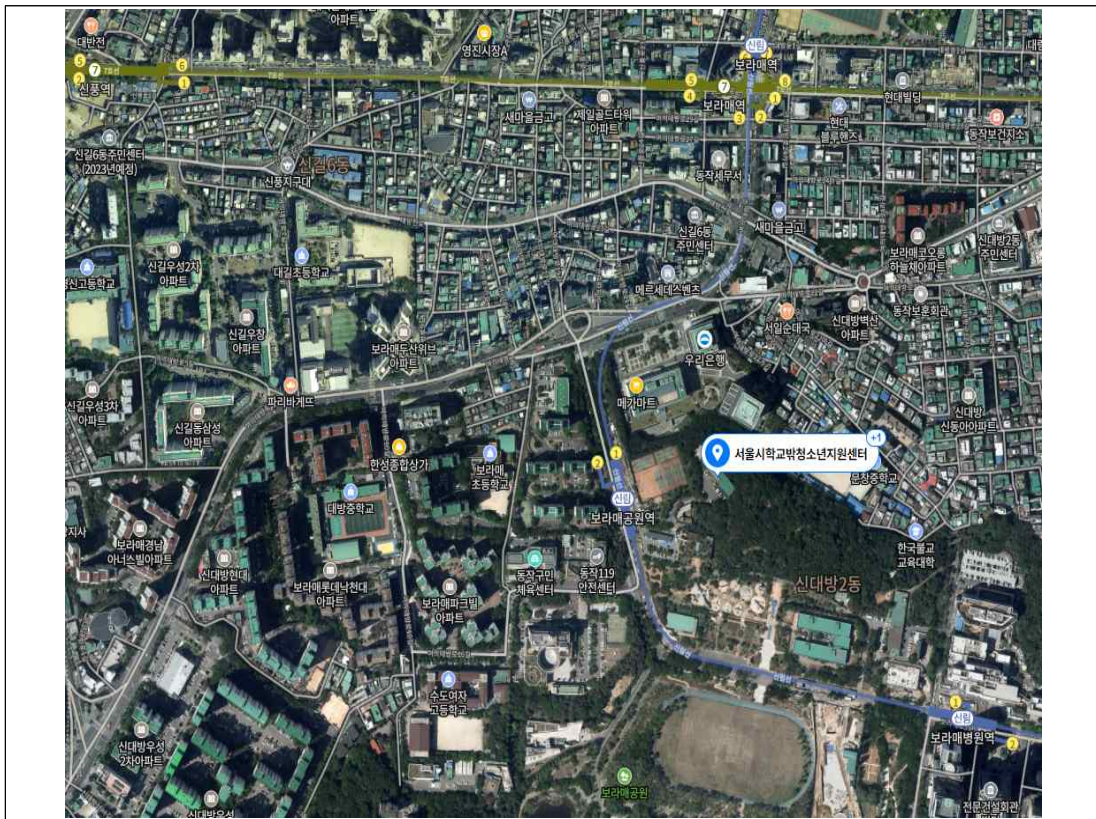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로,
- 정서불안, 사회적 관계 단절, 진로 미확립 등 복합적 어려움과 위기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상담·진로·진학 등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함.
- 또한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, 학업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협력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견 및 확산
-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
-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23-1. 자유회관 3층
- 개관일자 : 2001. 4. 6.
- 시설규모 : 307.56㎡
- 주요시설 : 사무실, 상담실, 활동실, 휴게공간 등
- 이용대상 : 학교 밖 청소년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1년 6개월(2026.12.28. ~ 2028.6.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,799백만원('26년)
- 산출근거

- 인건비 605,728천원, 운영비 57,847천원, 사업비 1,135,488천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감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-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협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1.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
 2. 위탁기간
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5. 노동자에 대한 고용·노동조건 개선노력
 6. 지도·점검,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
 7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」 제13조(지원센터의 위탁)

-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보영 (☎02-2133-4131)